

PwC
2015년 1분기 개정세법 요약

March 2015

Tax Flash News – No.4

□ New Regulation on Mutual Agreement Procedures

-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240/PMK.03/2014 (PMK-240)
 - 재무부에서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Procedures)와 관련하여 기존 규정에 이어, PMK-240을 발표하여, 기존 규정하에서 명확한 세부내용을 발표함
 - PMK-240은 2014년 12월 22일부터 적용되며, 진행중인 MAP 및 이후 신청되는 MAP에 모두 적용됨.
 - PMK-240은 기존의 규정을 revoke하지 않으며, 일부 내용을 개선한 규정임
 - A. 상호합의 신청대상자
 - 인도네시아 내 납세의무자(Taxpayer through DGT)
 - 인도네시아 국세청 (Director General of Tax, DGT)
 - 조세조약의 체결국의 세무당국 및 사법당국

납세의무자가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경우 세무조사 결과통지와 관련한 최초통지이후에 가능하며, 국세청이나 조세조약 체결국이 신청하는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일, 원천징수일 및 DGT에서 정하는 날 이후에 신청이 가능함. 기존 규정 및 PMK-240에 따르면, 상호합의는 Objection 및 Tax appeal 절차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함. 다만, Tax appeal에서 최종판결이 준비되어 심리가 종결되었음을 선언하면, 진행중인 상호합의는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상호합의는 신청후 3년이내에 결정이 되어야 하며, 양 과세당국의 합의하에 3년을 초과하여 연장할수 있습니다.

또한, PMK-240에 따라, 양 과세당국이 BAPA를 체결하는 경우, BAPA를 바탕으로 상호합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Tax Flash News – No.5

□ Update for taxpayer's maintaining English language and USD bookkeeping

-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1/PMK.03/2015 (PMK-1)
 - 영문장부 사용과 USD장부기장과 관련하여, 기존의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PMK-1을 발표함.
 - PMK-1은 하기의 조건에 해당하는 Taxpayer에게 해당되며, 자세한 사항은 하기 참조.
 - (1) Taxpayer가 DGT로부터 영문장부 사용과 USD장부기장에 대하여 이미 승인을 받은 경우
-> DGT의 결정문(decision letter)가 손상된 경우(not readable or lost),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함
 - (2) Taxpayer가 정부와 ‘contract’을 가지는 경우(예: contract of Work or Cooperation Contract/PSC)
-> PMK-1의 발효후 1년 이내에 등록된 taxpayer의 경우 Head of Regional Tax Office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년 이내에 등록된 taxpayer가 아닌경우 contract종료후 1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Tax Flash News – No.6

□ New Regulation on Advance Pricing Agreement('APA' or '사전합의')

-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7/PMK.03/2015 (PMK-7)
 - 재무부에서 사전합의(Advanced Pricing Agreement)와 관련하여 기존 규정에 이어, PMK-7을 2015년 1월 12일에 발표하였음.
 - PMK-7은 2015년 4월 12일부터 적용되며, 진행중인 APA 및 이후 신청되는 APA에 모두 적용됨.
 - PMK-7은 APA 절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각 절차별 세부설명을 하고 있음(자세한 사항은 PwC Indonesia Tax Flash No.6 참조)
- 1. APA단계
 - (1) Preliminary discussion (사전협의)
 - (2) Invitation to file an APA application (DGT의 APA신청승인)
 - (3) APA application (APA신청)
 - (4) Discussions on the APA (APA협의)
 - (5) Formally completing the APA documents (APA 관련 형식절차 완료)
- 2. 실행단계에서는 Annual Compliance Report(ACR) 또는 후속적인 APA신청서를 통하여 review가 이루어짐.

Tax Flash News – No.6 (continued)

□ New Regulation on Advance Pricing Agreement('APA' or '사전합의')

-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7/PMK.03/2015 (PMK-7)
 - APA는 일방APA(unilateral APA)와 쌍방APA(Bilateral APA)로 구분되며, 쌍방APA의 경우 인도네시아 과세관청과 상대국의 과세관청의 협의로 이루어짐
 - APA신청대상자
 - 인도네시아 내 납세의무자(Taxpayer through DGT) 또는 인도네시아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외국납세자
 - 납세의무자가 조세조약의 체결국의 세무당국 및 사법당국을 통하여 신청가능
 - 신청시점 : APA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6개월이전에 pre-lodgment meeting을 신청하여야 함 (예시: 2016년부터 4년간을 대상으로 APA를 신청하는 경우, 2015년 6월까지 pre-lodgment meeting 을 신청하여야 함)
 - 신청확인 : DGT는 pre-lodgment meeting 신청을 받은 경우, APA신청대상기간의 시작 1개월전까지 납세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대상기간 : UAPA의 경우는 최대 3년간 가능하며, BAPA의 경우는 최대 4년간 가능함

Tip. 각 세부절차별 세무내용은 PwC Indonesia Tax Flash를 참고부탁드리며, APA의 경우 양국의 과세관청이 협의하는, 소위, 대관업무이므로 본사, 자회사, 한국국세청, 인도네시아국세청 간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요구됩니다. 2015년 5월까지 인도네시아와 APA를 체결한 사례가 아직 없으며, 한국 및 일본 대기업들이 활발히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Tax Flash News – No.9

□ Tax Flash News

- Tax audit strategy for 2015

- DGT에서 2015년 세무조사 징수목표에 대하여 발표하였음. 2015년 목표징수액은 73.5조 루피아로 전년대비 약 3배 인상된 금액임.
- DGT는 Circular Letter No.SE-09/PJ/2015(SE-09)를 발표하여 2015년 세무조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동 레터는 집중조사대상, 징수목표액, 조사관련지표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법인 집중조사대상
 - (1) 조세조약 혜택의 남용법인
 - (2) 해외 자회사와 이전가격 거래가 있는 법인
 - (3) Oil & Gas 및 석탄법인
 - 개인 집중조사 대상
 - (1) 고소득층
 - (2)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개인
 - (3) 전문가

Tax Flash News – No.9 (continued)

□ Tax Flash News

- Tax audit strategy for 2015 (계속)

- SE-09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세무조사원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를 발표하였다는 점임. 아래 예시 참조

- (1) Approved tax assessment ratio

세무조사 수정사항 중 납세자가 동의하는 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총 제시 수정사항 중 납세자가 동의하는 비율로 계산하며, 표준지표는 45%임

- (2) Tax due adjustment ration

세무조사 중 발견/수정사항 금액에 대한 지표로, 납세자의 포지션에 따라 12% ~ 120 %로 규정하고 있음

- (3) Refund discrepancy ratio

환급포지션인 납세자에 국한되며, 환급금액 중 환급 거부금액의 비율을 표시하는 지표로, 표준지표는 13%로 발표하였음

Tax Flash News – No.9 (continued)

□ Tax Flash News

- Non-VATable catering services

- 케이터링 서비스는 2009년 발표된 부가세법에 따르면 면세재화 및 서비스에 해당됨. 이와 관련하여 2015년 2월 2일에 MOF regulation No.18/PMK.010/2015(PMK-18)을 통하여 세부사항을 추가하였음.
- 면세대상 케이터링 서비스는 반드시 고객이 정한 장소에서 이루어 져야 하며,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경우 부가세 면세 혜택을 받을수 없음.

- VAT on toll road services

- DGT는 2015년 3월 2일에 Regulation No.PER-10/PJ/2-15를 발표하여 toll road service에 대하여 부가세 징수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였음.
- 동 규정에 따르면, 2015년 4월 1일부터 toll road service는 부가세 대상 서비스에 해당하며, toll ticket은 VAT invoice로 간주된다.
- Toll ticket이 VAT invoice로 사용되기 위하여는, 사업자며, 주소, Tax ID 번호, VAT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Toll ticket에 이미 VAT가 포함된 경우, VAT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명기하여야 함.

Tax Flash News – No.10

□ Tax Flash News

▪ New rules on withholding tax on prizes

- DGT는 2015년 3월 3일 PER-11/PJ/2015(PER-11)을 발표하여, prizes에 대한 신규 소득세 내용을 발표함. PER-11은 이전 KEP-395/PJ/2011(KEP-395)를 대신하며, 2015년 5월 1일부터 적용됨.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음.
- Income tax on direct gifts

KEP-95에서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구입에 대하여 추첨을 통하지 아니하고, 모든 구매자에게 지급되는 gift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음. 하지만, 신규 발표된 PER-11에 따라, 이와 관련한 gifts는 소득세 대상거래에 해당되며(원천징수 대상은 아님), 고개의 연간소득신고시 포함되어야 함. 동 개정은 구매자가 gift에 대한 가격을 알아야 하는 실무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며, 이 경우, gift의 신고금액은 시장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음.

• Income tax on prizes given by banks

PER-11은 은행으로부터 deposit의 대가 또는 인출제한 약정으로 인하여 받는 gift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하고 있음. 동 gifts의 경우, 이자의 성격에 해당하므로 20%의 최종분리 원천징수가 되어야 하며, 기준금액은 시장가격으로 함. 실무적으로 고객에게 원천징수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은행은 20%의 원천징수를 추가 incentive로 고객에게 지급하게 됨을 고려하여야 함.

Tax Flash News – No.10 (continued)

□ Tax Flash News

- Non-VATable hotel services

- 2009년 신규 부가세법에 따르면, 호텔서비스는 부가세면제대상에 해당됨. 재무부는 2015년 3월 9일 신규규정 No.43/PMK.010/2015(PMK-43)을 발표하여 하기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음.
- 부가세 면세대상 호텔 서비스
 - (1) 룸 렌탈 서비스 (필수적으로 부가되는 헬스장, 세탁, 클리닝, 인터넷 서비스 등을 포함)
 - (2) 미팅, 게스트하우스 등의 모임을 위한 space 임대
- 부가세 면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호텔서비스
 - (1) 상기의 렌탈을 제외한, ATM, 은행 또는 식당에 제공하는 임대서비스
 - (2) 아파트 또는 콘도미니엄의 임대
 - (3) 여행사 데스크 등을 목적으로 여행사에 임대하는 서비스

Thank you.